

재일조선인 담론에 나타난 ‘기민(棄民)의식’을 넘어서

: ‘정치적 주체성’을 생각하다 *

조관자 (서울대 일본연구소)

국문요약

조선적의 다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 국적과 한국 국적으로 전환했고, 최근에는 조선총련 내부에서도 북한으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대두했다. 조선적을 이탈한 경우에도 한국과 일본에 국가적으로 귀속되기를 거부하며 조선적의 역사적 정체성과 민족적 주체의를 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글은 재일동포의 국적 문제를 역사적으로 개관하면서, 특히 조선적 재일조선인의 귀속의식과 기민(棄民)의식이 변화하는 양상을 조명한다.

조선적을 유지하는 재일조선인은 한국이 반복의식을 철회하고 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민족통일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정치의식의 전파를 막기 위해 2009년부터 한국정부는 조선적 재일조선인의 한국 방문 중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제한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조선적을 ‘남도 북도 아닌 무국적자’로 인식하며 조선적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북한과의 역사적 흔적을 소거시키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필자는 먼저 조선적의 정치성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선행시키며, 나아가 ‘남과 북, 일본’에 관련한 정치적 문제를 균형 있게 성찰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귀속의식, 기민의식, 정치적 주체성, 조선적 재일조선인, 여행증명서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2014S1A5B8066696).

1. 재일동포의 ‘기민(棄民)’ 담론과 엇갈린 ‘반한’ 표상

일본 내 소수민족으로 거주하는 재일동포의 역사가 벌써 100년을 넘겼다. 그 후손이 4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 삶의 변화는 복잡다단하다. 다만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한반도와 일본에 걸친 이념적·국가적 대립, 그리고 탈냉전과 세계화의 역사적 변동에 직접 노출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국적의 이동은 1945년 이후 재일동포의 삶에 나타난 굴곡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현상이다.

일본의 패전으로 재일동포는 일제히 ‘일본국민’에서 ‘조선적’의 외국인 신분으로 변했고,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조건에서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국적 선택의 갈등을 겪어야 했다. 그들의 국적 표기는 가족 단위 또는 개인 단위에서 2회 이상 변경된 경우도 적지 않다.¹⁾ 국적의 이동 양상은 시대의 동향에 따른 재일동포의 생활과 정치의식, 민족의식과 조국 관념의 변화를 복합적으로 나타낸다. 특히 귀속의식과 기민(棄民, 버려진 백성)의식의 엇갈린 표상은 재일동포의 생활사와 운동사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나아가 한반도의 분단 및 그 극복을 위해 풀어야 할 정치적 쟁점과 시대적 과제까지 내포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재일지식인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2000년대에 조선적 재일조선인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하지만 스스로를 분단 조국과 일본에게서 ‘버려진 백성’으로 표상하는 재일

1) 국적 변경의 사례는 다양하다. 조선→일본→한국, 반대로 조선→한국→일본의 변화가 대표적이다. 또한 조선적이 모국방문을 위해 한국 국적을 취했다가 다시 조선적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조선적과 결혼한 일본/한국 국적 여성이 조선적으로 변경했다가, 시대 변화 속에서 가족 단위로 국적을 바꾸는 사례도 있다. 세계화 이후에 가족 세대 간 국적 구성이 다양해진 경우도 적지 않다. 혈통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국적법에서 20세까지의 국적은 부모를 따르고, 성인의 이중국적은 허용하지 않는다.

조선인 담론도 확산되었다. 탈냉전 이후 분쟁 지역과 난민이 늘어난 세계적 상황에서, 마침 북한을 탈출하는 기아 난민의 행렬도 이어졌다. 그 중에는 북송사업으로 이주했던 재일조선인의 후손도 있었다.²⁾ 그러나 한국 사회에 소개된 재일조선인의 기민, 난민 담론은 탈북 난민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주로 한국의 기민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조선적 재일조선인 중에는 탈북자를 “조국과 가족을 버린 파렴치한” 또는 “미국의 대북인권 압박정책에 놀아나는 민족 배반자”로 보는 시선이 많았다.³⁾ 세계적인 탈냉전과 글로벌리즘의 영향으로 재일조선인의 조국에 대한 귀속의식이 약화하고 조선총련의 대중적 기반이 붕괴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냉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적과 재일조선인의 운동사 담론에서는 반미 민족운동의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활동하는 주체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것이다.⁴⁾

그렇다고 기민 표상과 디아스포라 담론이 단순히 냉전적 갈등구조 속에서 엇갈리고 충돌하는 것만은 아니다. 누가 누구에게 발화하는가의 맥

2) 필자는 2007년 8월 초 중국 출장 중 연변에서 재일동포의 후손인 20대 초반의 탈북 청년을 만났다. 부모가 사망한 후 할머니가 “너라도 꼭 일본으로 가라”고 했으며, 고모가 뚝토리현에 산다고 했다. “일본 대사관으로 찾아가라. 일본에서 법적으로 수용하게 되어 있다”고 말해 주었지만, “중국 공안이 지키고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일본에 가서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한 필자는 일본에 돌아간 후 그 청년에게 연락했지만 두절되었다.

3) 2000년대에 일본에 체류했던 필자가 당시에 접한 재일조선인들의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재일동포 이영화(간사이대학 교수)씨가 탈북자를 위해 만든 단체 ‘구출하자 북한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도 겹쳤다.

4) ‘대한제국’의 정치적 자주성을 부인한 일본은 식민지 시기 이래 ‘조선’이라는 민족, 지역명을 관용적으로 써왔다. 이 글의 용어 ‘재일조선인’은 조선적뿐 아니라, 한국 국적이어도 스스로 ‘조선인’을 민족명으로 채택하고 1970년대부터 일본어 공공영역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재일조선인 담론의 생산에 적극 가담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락에 따라 기민 담론이 내포하는 의미가 얼마든지 달라지고, 기민 표상 속에서도 '적대적 공존'이 일어난다. 가령, 북송가족의 일본 귀환을 염원하는 재일동포는 북한과 조선총련, 그리고 일본의 기민정책을 비판한다.⁵⁾ 한편, 『만화 혐한류』의 저자인 야마노 샨린이 2006년에 펴낸 『재일의 지도: 대한기(棄)민국 이야기』라는 책의 제목은 한국에서 버려진 재일동포들이 일본 전국에 흩어져 산다고 말한다.⁶⁾ 야마노는 재일동포의 기민 담론을 역이용하여 일본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반한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혐한류 담론과 재일조선인 담론이 서로 적대적 전선을 형성하면서 공교롭게 한국의 '기민정책'에 대한 비판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 글은 조선적 재일조선인의 귀속의식과 기민의식에 대해 고찰한다. 조선적의 다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 국적과 한국 국적으로 전환했고, 최근에는 조선총련 내부에서도 북한으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대두했다. 또한, 조선적을 이탈한 경우에도 한국과 일본에 국가적으로 귀속되기를 거부하며 스스로에게 민족적 주체의식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글은 재일동포의 국적 문제를 역사적으로 개관하면서, 특히 조선적 재일조선인의 귀속의식과 기민의식이 변화하는 양상을 조명할 것이다.

조선적을 유지하는 재일조선인 중에는 한국이 반복의식을 철회하고 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민족통일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정치의식의 전파를 막기 위해 2009년부터 한국정부

5) '북송사업(일본에서는 '귀국사업'으로 칭함)'은 '북한과 조선총련의 사기극'으로 비판되면서도, 생활고를 피해 '인민의 낙원'을 망상했던 동포들의 판단 문제나 동포들에게 고단했던 당대 일본의 상황, 그리고 인도주의를 앞세워 재일조선인을 방출하려던 일본 정부와 언론에 대한 비판적 지적도 더불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어 소개는 통일부 공식 블로그 "화려한 허상, 재일조선인 북송사업의 비극"; (<<http://blog.unikorea.go.kr/4850>> (검색일: 2015.4.10) 참조.

6) 山野車輪, 『在日の地圖: 大韓棄民國物語』(東京: 海王社, 2006).

는 조선적 재일조선인의 한국 방문 중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제한했다. 그러자,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기민정책을 비판하는 여론도 고조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주목하면서 조선적 재일조선인의 기민의식과 정치의식에 대해서 재고해 볼 것이다.

II. 재일동포의 국적과 귀속의식의 변화

한반도에서 태어나면 좋은 싫든 국적이 선천적으로 부여되지만, 해방 직후부터 재일동포는 일본국민에서 외국인(조선적)으로 변경됐고, 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조선적)이거나 대한민국의 해외국민(한국 국적), 또는 일본인(귀화자)으로 호명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조선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기반이 붕괴하고 조선적 소지자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부터 조선적을 ‘북한국적’과 ‘무국적’으로 구별하는 논리도 등장했다.

일본의 주권 회복 및 한반도의 국가 수립 이전인 1947년, 일본에 잔류하기로 결정한 재일동포들은 출신 지역을 나타내는 ‘조선’으로 외국인 등록을 마쳤다. 이들 조선적은 대한민국 ‘제헌헌법’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규정되었고, 동시에 북한에서도 해외공민으로 간주되었다.⁷⁾ 그러나 1948년 이후, 조선적을 대표하던 좌/우파의 정치단체가 각각 북한과 남한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 조선적의 귀속의식도 분열되었다. 좌파운동이 활발했던 전후 혼란기부터, 조선적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북한과 일본이 정식 수교를 맺지 않았기

7) 정인섭,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의 법적 문제,”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1호(2014), p.18.

에 조선적이 북한국적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으며, 조선적 소지자가 모두 조선총련의 열성적 활동가에 포섭된 상태는 아니었다. 다만 조선총련은 북한의 해외공관으로서 조선학교를 통해 귀속의식을 키우고 ‘정치적 일꾼’을 양성했으며, 산하의 청년 및 부녀조직을 운영하여 조선적을 망라하는 자치단체로 활동했다.⁸⁾

외국인 국적란의 ‘한국’ 표기는 1950년 민단(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1994년 재일본대한민국민단으로 개칭)의 요청으로 승인되었지만, 일본은 국적란 표기에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선’과 ‘한국’(대한민국)을 모두 국적 표기로 승인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 1951년 한일회담 예비회담을 추진하면서부터 한국 정부는 조선적의 국적표기를 한국으로 바꿀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국적란의 ‘한국’ 표기는 일본에 대한 국가적 위상의 제고 및 남북한 체제 경쟁의 실질적 성과로 간주되었을 터이다. 그러나 1952년 주권을 회복한 일본은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면서도, ‘조선’이 지역명을 나타내는 차원에서 그 표기를 인정한다는 논리로 일관했다.⁹⁾ 조선총련과 일본의 좌파세력이 한국 표기를 절대 수락하지도 않았지만, ‘대한제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부정하고서 ‘조선’ 호칭을 관습적으로 사용했던 일본의 국가적 입장에서도 ‘조선’ 표기를 폐기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1950년대에는 이승만 정권 하에서 독도 영유를 추진한 한국과 북송사업을 승인한 일본의 한일관계가 북일

8) 일본公安조사청의 조사(公安調査廳, 『朝鮮總連を中心とした在日朝鮮人に關する統計便覽 昭和56年版』, 1982)에 따르면, 1960년대 초반의 조선총련 산하의 대중조직에서 활동하는 동포는 20만 명 정도로, 민단의 6~7만 명을 압도하고 있었다. 水野直樹·文京洙, 『在日朝鮮人 歴史と現在』(東京: 岩波新書, 2015), p.138.

9) “외국인 등록상의 국적란의 ‘한국’ 또는 ‘조선’의 기재에 관하여”(일본법무성, 1965.10.26), 한영구·윤덕민 공편저, 『현대 한일관계 자료집1(1965년~1979년)』(서울: 오름, 2003), p.82. 국적 표기 문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조경희, “남북분단과 재일조선인의 국적,” 『통일인문학』 제58집(2014년 6월), pp.260~265 참조.

관계보다 원만치 못했던 사정을 감안한다면, ‘조선’ 표기는 일본과 북한의 공통된 이해를 반영한 표기였다.

일률적으로 부여받은 조선적에서부터 일본이나 한국 국적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1952년 이후 미미하게 꾸준히 존재했다. 그러다가 한국 국적자에게 ‘협정영주권’이 부여된 1965년부터 협정영주권 신청 기간에 한국 국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조선적이 한국 국적 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면 먼저 일본의 외국인 등록제도에서 조선적을 말소시켜야 했다.¹⁰⁾ 조선적이 형식적으로 출신지역을 나타내는 임시 기호였기에 이러한 규정은 행정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북한과 조선총련에게는 조선적이 실질적으로 ‘북한 국적’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 저항도 격렬했다.

드디어 1969년 통계에서부터 한국 국적(309,637)이 조선적(297,678)을 넘어서고 1970년대에는 한국 국적이 40만에 이른다.¹¹⁾ 이를 두고 조선총련은 민단의 강제병합이라며 마찰을 빚기도 하고, 국적표기를 조선으로 다시 변경하자는 국적 서환(書換)운동도 펼쳤다.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의 일본 지방자치체에서 조선총련의 요구를 허용하는 사례도 있었다.¹²⁾ 하지만 협정영주권자에게는 ‘교육, 생활보호 및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조선총련에 포섭되지 않은 조선적의 이탈 현상은 급격히 증가했다. 생활보호제도는 전후에 줄곧 일본인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지만, 취직차별을 겪고 자영업 종사자가 많은 조선적에게 국민건강보험은

10) 그러나 일본의 외국인 등록제도는 2012년에 폐기되었다. 현재, 외국인은 재류 카드를 작성하며 ‘주민기본대장’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다.

11) 이광규, 『在日韓國人: 生活實態를 中心으로』(서울: 일조각, 1983), p.88. 한국 국적 취득자는 1963~64년에 12,790명, 1964~65년에 16,049명이 증가하고, 1965년부터 2년간에는 한일회담 반대운동 등의 영향으로 각각 9,190명과 13,650명으로 증가 추세가 감소하다가,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연평균 2만 명을 상회했다.

12) 민단과 조선총련의 대립 양상과 조선총련의 국적바꿔쓰기 운동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여론에 대해서는 金英達, 『日朝國交樹立と在日朝鮮人の國籍』(東京: 明石書店, 1992), pp.69~77.

유리한 선택 사항이었다. 조선적의 인구는 1959년부터 실시된 북송사업 만으로도 9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조선적이 또다시 급감한 것은 1994년 김일성 사후부터 2006년 무렵까지다.¹³⁾ 일본의 외국인 통계에서는 ‘한국·조선’을 함께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적의 정확한 인구는 알 수 없지만, 현재 3만에서 6만까지로 회자된다. 한편, 재일한국인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을 기점으로 한국 국적과 조선적이 동시에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¹⁴⁾ 일본 총무성의 외국인 통계를 보면 2007년부터 재일한국·조선인(593,489명)을 제치고, 재일중국인(조선족 포함 606,889명)이 최다수 외국인으로 등장한다. 2014년 6월 현재 ‘한국·조선’의 합계는 508,561명이다. 반면, 일본 국적의 취득은 귀화 조건이 완화된 1991년 이후 매년 1만 명 가까이 증가하여, 귀화자의 누적 수는 2013년 현재 35만 명에 이르렀다.¹⁵⁾ 일본 귀화

13) 민단의 일본어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단과 재일동포의 통계〉 중에서 ‘3. 귀화자 수’는 1950년 이후 매년 수천 명씩 발생했고, ‘10. 민단 단원과 국민등록자 수’는 2004년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써 조선적에서 이탈하는 인구의 증가폭을 추측할 수 있다. (http://www.mindan.org/shokai/toukei.html) (검색일: 2015.3.1).

14) 아래 표는 유혁수,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및 사회적 위상: 1991년 합의각서 이후를 중심으로,” 『일본비평』, 제12호 (2015년 2월)의 〈표 1〉을 참조하여 만들었다.

〈표 1〉 재일한국·조선인 인구 추이(2006년 이후 감소 추세)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2
한국조선	598,219	593,489	589,239	578,495	565,989	545,401	530,046	519,740
특별영주자	438,974	426,207	416,309	405,571	395,234	385,232	377,350	369,249
기타	159,245	167,282	172,930	172,924	170,755	160,169	152,696	150,491

출처: 일본총무성의 외국인 통계

15) 민단을 중심으로 일본거주를 비롯한 법적 지위의 안정을 요구하는 운동이 지속되었으며, 1981년 일본이 ‘난민조약’을 비준하면서 한일협정에서 제외된 조선적과 재일동포 후손 및 밀항자의 정주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길이 열렸다. 1989년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개정으로 1991년부터 과거에 제국일본의 국민이었던 재일한국·조선인과 그 후손들에게 특별영주권이 부여되고, 귀

의 증가는 일본이라는 생활공간에서 다문화공생 정책, 고령화에 따른 특별영주자의 자연사, 한반도 요인, 후속 세대의 ‘조국 지향성’ 쇠퇴 및 귀속의식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측된다. 한반도 요인으로서,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정세불안, 한국의 병역의무 회피, 통일담론의 영향력 상실 등을 들 수 있다.¹⁶⁾

재일동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통일조국’으로의 귀환 담론이 명분을 발휘했고, 탈냉전 이후 ‘원 코리아’ 운동이 실제로 활발해졌다. 그러나 통일이 강조된 만큼이나 각각의 귀속의식은 여전히 분열된 상태였다. 다만, 재일한국인과 재일조선인은 서로의 민족의식을 경쟁적으로 공유했기에 그러한 대립도 가능했다. 남북의 대결과 일본과의 갈등이 겹쳐지는 중층적 대립구도 하에서 일본 귀화자는 오랫동안 주체성 상실자로 소외되었고, 일본과 동포사회의 강력한 민족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했다.¹⁷⁾ 조선적에서 한국 국적으로의 변경이 급증한 오늘날에도 귀화를 배척하는 시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화의 진전과 4세 이후가 등장하는 세대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일본에서도 다수자 사회로의 동화를 오랜 역사적 공존 과정에서 일

화조건도 완화되었다.

- 16) 거꾸로 한국은 2011년 3.11 대지진과 같은 일본의 위기 상황을 탈출할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실제로 일본 ‘탈출’은 생활공동체에 대한 ‘배반’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주자들의 이동은 적었지만, 한국 여권을 소지했다면 직접적인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대응력이 높아진다.
- 17) 초등학교 시절에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된 양정명(梁政明, 山村政明)은 1967년 와세다대학 입학 후 신좌익계 당파와 대립한 일본공산당의 청년조직에 관여한다. 그는 일본조선연구소에 입회를 요청하나 ‘귀화한 배신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한다. 양정명은 당파를 비판하고 국적 문제를 고뇌한 유서를 남기고 1970년 10월에 분신자살한다. 山村政明, 『いのち燃えつきるとも』(東京: 大和書房, 1971). 1980년대 이양지(李良枝)의 소설은 귀화한 일본인의 고민에서 출발해서 그 정체성 혼란의 극복 과정을 보여준다.

어나는 문화적 혼종의 자연스런 현상으로 수용하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3세·4세에게 일본은 '모국'의 생활공간이며, 그들은 '일본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모색한다. 2000년대 이후 일본 국적의 재일동포들은 스스로 시민적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일본 사회의 다원화, 다민족화에 기여한다는 의식을 표명한다.¹⁸⁾ 2012년 이후에 '재일특권을 허락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의 배외주의적 현상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지만, 일본 사회의 기조는 1990년대 이후 소수자와 함께 다문화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분위기로 변했다.¹⁹⁾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거에 일본 국적을 제외시켰던 재일조선인 담론에서도, 일본 귀화를 포함하여 국적에 상관없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일본에 정착하게 된' 모든 동포를 '재일조선인'으로 재규정하게 된 것이다.²⁰⁾

18) '탈자이니치론'으로 한국 출신의 뉴커머 언론인 池東旭이 쓴 『在日をやめなさい — 70萬人の優秀なマイノリティに告ぐ!』(東京: ザマサダ, 1997)가 있고, 스스로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고 정체성 정치를 펼치는 鄭大均, 『在日韓國人の終焉』(東京: 文藝春秋, 2001)이 있다. 관련 논문은 Hester, Jeffrey T. "Datsu zainichi-ron: An Emerging Discourse on Belonging among Ethnic Koreans in Japan." Nelson H. H. Graburn, John Ertl and R. Kenji Tierney ed., *Multiculturalism in the New Japan: Crossing the Boundaries Within* (New York: Berghahn Books, 2008), pp.139~150.

19) 다문화 공존 정책이 결과적으로 일본 사회에 동화되는 것으로 귀결되며, 다문화 안의 문화적 서열을 배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Chris C. Burgess, "Multicultural Japan? Discourse and the Myth of Homogeneity." *The Asia Pacific Journal: Japan Focus* (2007); <<http://www.japanfocus.org/-Chris-Burgess/2389>> (검색일: 2015.3.31). 일본 국적 취득을 민족적 동화로 간주하는 논리는 민족성의 역사적 변화 자체를 은폐할 우려가 있다. 실제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를 밑도는 일본에서 다수자 문화가 지배하는 현상은 불가피하지만, 소수자 문화의 단순한 소멸이 아닌 문화적 혼종의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국인 인구 통계는 2014년 총인구 1억 2727만 명 중 162만 명. 총무성 통계국, "人口推計," 2014년 5월 20일; <<http://www.stat.go.jp/data/jinsui/pdf/201405.pdf>> (검색일: 2014.6.1).

20) 1975년 박경식(朴慶植), "在日朝鮮人運動史—その生活・運動研究序說," 『季刊三里』, 第1號 (1975年 春), p.194에서는 재일조선인에서 일본 국적을 제외시

Ⅲ. 정치적 독자성을 추구하는 조선적

이제 조선적의 ‘국적서환’ 운동은 다시 볼 수 없지만, 한국 국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선적을 말소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저항감은 재일조선인 3세에게서도 발견된다. 조경희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에 한국 유학이나 한국인과의 결혼을 위해 조선적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조선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웬지 모를 ‘죄의식’과 ‘소외감’, 자신이 변한 것 같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다고 한다.²¹⁾ 조선학교를 졸업한 이들은 조선적과 스스로의 정체성을 일치시켜 왔지만,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조선적’을 말소시키는 행정적 과정에서 ‘정치적 굴종’이나 ‘사상적 변절’을 강요당한 것과 같은 굴욕감마저 느끼는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 정부의 국민화 정책에 위화감을 느끼며 자신들의 역사적 정체성과 정치적 독자성을 강조하는 재일조선인 담론에서는 북한의 국적법(1963년 제정)이 외국 귀화를 북한 국적의 상실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²²⁾ 북한의 국적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던 조선적과 그 자녀로서 그 국적을 방기

켰지만, 1997년 서경식은 재일조선인의 범주에서 국적을 문제 삼지 않고, 식민지 기원을 강조했다. 徐京植, “‘에스닉·마이노리티’가 ‘네이션’가”, 『歴史學研究』 増刊號(1997년 10월). 한국어 논문은 서경식, “재일조선인이 나아가갈 길: ‘에스닉 마이노리티’인가 ‘네이션’인가,” 『창작과 비평』 제102호(1998년 겨울), p.353.

21) 조경희, “탈냉전기 재일조선인의 한국 이동과 경제 정치,” 『사회와 역사』, 통권 제91호(2011년 가을), pp.71-73.

22) 조경희, “남북분단과 재일조선인의 국적,” p.261.

하지 않은 자”를 자국의 공민으로 삼았기 때문에 조선적은 자동적으로 북한의 해외공민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1995년에 일부 개정된 북한의 국적법에서는 외국의 공민 또는 무국적 상태에서 북한의 외교, 영사기관에 문서로 등록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제8조). 다만, 혼인, 이혼, 입양, 파양의 경우에는 국적 변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제11조), 과거 북한 국적을 가졌던 자의 국적 회복을 인정한다(제12조).²³⁾ 따라서, 조선적의 국제결혼과 해외입양이라는 예외적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되지만, 조선적의 탈퇴는 국적 포기로 인정된다. 개정된 국적법 제8조에서 무국적자에게 새롭게 등록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해외공민으로 간주되었던 조선적을 무국적으로 인식하는가는 별도의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을 ‘조국’으로, 한국을 ‘모국’으로 인식해 온 조선적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적의 포기를 요구하는 한국의 국적법은 재일조선인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분단 조국의 어느 한 쪽을 선택하게 만드는 ‘반통일적 악법’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국적법 또한 조선적에 대한 포섭 의지를 포기한 채, 국적 선택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패전 때문에 일률적으로 부여된 조선적의 감소 추세는 역사적 필연이므로, 1963년의 단계에서도 자국 공민의 감소를 공식 추인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1995년 이후, 조선적의 지속적 감소에 대한 새로운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겠지만, 북한과 조선총련으로서도 실질적 통제의 한계를 자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국적을 초월한 혈통주의에 입각하여 해외동포를 포섭하고 귀속의지를 장려하는 정책적 지향성은 한국 정부의 해외동

23) 정인섭, “재일한인의 국적과 남북한의 국적법 개정,” 강덕상·정진성 외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서울: 서울대출판부, 1999), pp.449~450.

포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2000년대 이후에는 조선총련 활동가조차도 북한에 대한 정치적 충성이 아닌, 북송 가족에 대한 고려와 생계 대책으로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한국 국적 또는 일본 국적으로 이동하는 일이 늘어나자, 재일조선인의 가족 구성원에서 조선적과 한국 국적이 혼재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조선적을 상실했어도 조선적이 혼재하는 가족 또는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조선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바야흐로 조선총련 간부의 가족과 조선학교 안에서 조선적과 한국 국적이 공생하는 시대이다. 세계화된 사회에서는 조선적이 한국 국적이거나 일본 국적뿐 아니라 미국의 시민권을 획득할 기회도 주어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조선적의 상실은 생활의 공간을 선택하기 위한 편의적 절차일 뿐, 조선적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자의적 해석이 성립하고 통용되기도 한다.²⁴⁾ 국민국가의 행정 시스템에서 개인이 법적 강제성에 저항할 수는 없지만, 이제 국적이 민족의식을 제한하거나 개인의 정체성의식을 규정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에 대한 조선적의 귀속의식이 약화되어도 조선적의 독자적 정치의식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선학교에서 민족교육을 받고 조선적을 유지하는 후속 세대들 중에는 조선적과 자신의 정체성을 일체화시키고, 조선적 재일조선인의 운동사와 집단주의적 공동체 의식을 계승하는 것에서 자부심을 갖기도 한다.²⁵⁾ 조선적 재일조선인 운동사의 관

²⁴⁾ 2011년 2월 26일 동국대 일본학연구소가 주최한 학술대회, 『재일코리아 문학의 초국가주의』 중 전체토론에서 한 재일조선인 유학생 청년이 자신이 소유한 복수의 여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여권과 대한민국이 발행한 여권)을 보여주었다. 그 유학생은 국민주권을 행사하되 대한민국에 귀속하지 않고,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는 ‘새로운 국가’를 추구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²⁵⁾ 金有變, “民族の誇りをかけた闘い: 民族教育と集團主義教育の意味,” 『部落解放』 第687號(2014年 1月), pp.24~33.

점에서 북한과 조선총련에 대한 애착심을 키워온 이들은 조선적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조직적 난관을 타개하고자 노력한다. 조선학교의 민족교육에 대한 지원과 일본의 교부금 배제 및 중단에 대한 항의 운동은 그 대표적 사례다.

조선총련 산하에서 독자적 민족교육을 수행해 온 조선학교는 2010년부터 실시된 일본의 고교무상화 정책에서 배제되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가 공문화한 후, 일본의 보수적 시민단체는 지방자치체에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라고 요구했고, 2011년부터 도쿄와 오사카 및 일부 지자체에서 교부금을 중단했다. 2012년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조선학교가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된 근거로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옹호하고, 조선총련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보조금의 지출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²⁶⁾ 조선학교 측은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를 걷어내는 등 북한과 거리두기를 시도하면서, 일본의 안팎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2013년 1월 24일 아이치조선중고등학교(愛知朝鮮中高級學校)의 고등학생들은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²⁷⁾

26) 고교무상화 정책의 실질 내용은 국공립고교에 대한 수업료 무상화·사립고교에 대한 취학지원금 지급제도이다.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문부성의 심사 기준 및 내용에 대해서는 “資料1 高校無償化に係る朝鮮高級學校の審査狀況,” 2012년 3월 26일; <http://www.mext.go.jp/a_menu/shotou/mushouka/detail/1342909.htm> (검색일: 2015.4.1) 참조.

27) 2009년에 일본의 ‘재일 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이 교토의 조선초등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여 학생들을 위협한 혐의로 고소된 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9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1200만 엔의 배상금을 조선학교에 지급하고 조선학교 주변에서 시위를 엄금하도록 최종 판결을 내렸다. 앞으로 일본의 사립학교보조금 지원 제도에 합당하도록 조선학교가 보편적 교육이념에 부합하고, 일본 내에서 민족어를 전수하고 민족문화를 재창조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게 되기를 기대한다.

일본의 패전 직후부터 조선적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동화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일본 교육행정의 지도를 받지 않고서도, 일본 지자체와 북한의 지원을 받아 독자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모두 요청하게 되면서 북한 및 조선총련과는 정치적 단절, 즉 북한의 정치적 지배에 대한 동화에서 벗어날 것을 거꾸로 요구받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조선총련을 순수한 재일조선인의 권익 옹호 단체로 환골탈태시키자는 주장도 이미 나왔다. 과거 조선대학교 교수였던 박두진은 “북한이 가장 겁내는 것은 조선총련 내에 ‘독립파’가 득세하는 것이다. 요즘 젊은 활동가들 중에는 북한 지지는 좋지만 북한 지도를 받아 활동하는 것은 안 된다, 독립적으로 하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진술한다.²⁸⁾ 현재 북한의 조선총련에 대한 지도력은 여전히 관철되고 조선적의 소수정예파가 활동하고는 있지만, 차후의 변화를 지켜볼 일이다.

한편, 한국에서도 조선학교의 지원자들이 일본의 민족차별 현상과 민족교육의 필요성을 호소하면서 ‘우리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얻어내는 데 일정한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학교는 한국·일본 국적으로 변경한 학생과 뉴커머 한국인, 재일중국인 조선족에게도 열린 학교로 변하고 있다. 2000년대에 조선학교를 취재한 인류학자 송기찬은 우리말 교육이 학생들에게 활기를 주기도 하지만, 집단주의 교육 내용은 다양한 에스닉 코리안에 대한 획일적 ‘억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학생들은 교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일본말’과 ‘일본이름’을 쓰면서 일본 사회에 융해되고, 각각의 가정과 일본 사회 속에서 다양하게 자기를 연출한다. 송기찬은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퍼포먼스야말로 재일

28) “특파원 리포트 조선총련 간부들도 사석에선 北 비판… 젊은 활동가들은 北 추종만 말고 독립활동 하자고 해,” 『조선닷컴』, 2010년 2월 10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0/2010021000082.html> (검색일: 2015.3.1).

조선인 학생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제라는 사실을 밝히며, 민족적 주체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했던 기존의 민족교육론을 비판한다.²⁹⁾

IV. ‘재외동포법’에 해당하지 않는 조선적

오늘의 세계화 사회에서 이중국적을 갖거나, 2개 이상의 국가를 이동하며 장기간 거주할 자격을 갖는다면, 이는 남다른 혜택이 된다. 가령, 일본에서 특별영주권을 갖는 재일동포가 한국 국적을 갖는다면,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한 동포의 경우에도 한국 이동의 장벽은 거의 없다. 1999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대행하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³⁰⁾ 외국 국적의 동포들이 모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느끼지 않도록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동산의 취득·처분을 허용하는 등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적 재일조선인은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 조선적은 해외국민으로 인정되었지만,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 실효성을 상실했다. 북한의 영향력이 쇠락한 오늘날, 조선적 소지자가 모두 북한이나 조선총련에 귀속의식을 갖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29) 宋基燦, 『語られないものとしての朝鮮學校』(東京: 岩波書店, 2012), p.216.

30) 정식 명칭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제정 당시에 재외국민에게만 적용하고, 중국 및 일본 국적이 제외되었지만,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정착하여도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복수 국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최신 개정은 2014년 5월 20일에 이루어졌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검색일: 2015.3.1) 참조.

북한과의 친화성이나 비판적 거리를 구별하는 징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적대적 대립이 고조되자, 보수정권은 조선적의 유지를 북한을 지지하는 정치적 의사 표시로 간주하며, 한국의 출입국 관리에서 그 정치활동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한국정부는 조선적 동포의 한국 국적 취득을 장려하기 위한 회유정책으로 1970년대에 ‘조선총련계 동포 모국방문 사업’을 실시했다. 당시 조선총련계의 여론은 고향 방문을 한국의 군부독재 정권에 포섭되는 행위로 비난했다. 제주도 4·3을 소설화한 김석범은 작가로서 고향 제주도를 취재하고 싶은 절박한 심정을 억누르며, 한국 정권에게는 “조선총련계의 작가들이 한국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용가치가 있다”는 정치적 이유를 앞세웠다.³¹⁾ 1981년, 재일조선인 담론의 대중화에 기여한 잡지 『계간 삼천리』의 편집위원인 김달수·강재언·이진희가 한국을 방문하자, 김석범은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편집위원회를 탈퇴했다. 이렇듯 정치적으로 엄격했던 김석범이 자신의 대하소설 『화산도』의 완성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권의 민주화 선언 이후였다.

‘조선총련계 동포’인 조선적이 한국 방문을 ‘정치적 배반’이나 ‘도덕적 변절’로 매도하지 않고 스스로도 자유롭게 왕래하게 된 것은 김대중 정권 이후였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법(1990년 제정)’에 의거하여 간첩사건 관련자와 신원 특이자를 제외하고, 조선적에게 ‘여행증명서’ 발급이 전면 허용되었다. ‘지구촌동포연대’의 대표 배덕호가 언론에 제시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4년 초까지 5년간 여행증명서 발급 실적은 11,819건(거부 사례는 4건)이다.³²⁾ 법학자 정

31) 김석범은 재일조선인으로서 처음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한 작가 이회성의 한국 방문도 비판했다. 金石範, “在日의虛構”, 『在日の思想』(東京: 筑摩書房, 1981), p.244. 처음 실린 곳은 『朝日新聞』, 夕刊, 1977년 8월 10일.

인섭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까지 10년간의 누적 발급 건수는 24,000건으로 한 해 평균 2,400여 건이 발급된 셈이다. 이러한 추세는 이명박 정권 이후 약간 감소했지만, 2008년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³³⁾

그러나 2006년 10월에 북한의 핵실험이 보도된 후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2009년에는 여행증명서 신청 1,497건에 대한 발급 거부가 279건으로 늘었다. 주일한국영사관에서 총련 관련자의 한국 방문을 차단하고, 조선적 신청자의 한국 내 정치활동을 이유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영사관의 직원이 조선적 신청자에게 한국 국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의 발생 후에는 신청 건수 자체가 감소하여, 2013년에는 86건의 신청에 40건이 발급되었다. 그 중에는 정치활동을 이유로 학술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례도 있고, 한국 남성과 결혼한 조선적 여성의 한국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여성의 경우,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계기로 여론의 정부정책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면서 재입국이 허용되었다.

조선적에게 여행증명서를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사태는 한국 사회의 ‘남남갈등’이 재현되는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의 보도는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및 인터넷 뉴스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³⁴⁾ 2010년 7월 13일에는 강창일 의원 외 민주당 의원

32) 배덕호 KIN(지구촌동포연대) 대표, “조선적 재일동포에게 등 돌린 정부, 거드는 대법원,” 『프레시안』, 2013년 12월 18일.

33) 아래 표는 정인섭이 언론보도와 외교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의 법적 문제,” p.10.

〈표 2〉 연도별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의 발급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신청건수	3,329	2,957	2,229	2,033	1,497	401	64	44	86
발급건수	3,358	2,949	2,229	2,030	1,218	176	25	20	40

34) “‘조선적’은 적대적? ‘조선적’ 재일동포의 여행증명서 발급 요청 거부는 정당하다 판결한 대법원, 재일동포 역사와 현실 무시한 처사,” 『한겨레 21』, 제991호

12인의 발의로 ‘여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외교통상 통일위원회’에 계류되었다. 하지만 여권법 개정안의 처리는 보류된 채, 18대 국회가 종료하면서 자동 폐기되었고, 이후 다시 제출되지 않았다.³⁵⁾ 보수 진영에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복세력의 입출국을 자유롭게 할 경우 적잖은 안보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여권법의 개정 입법화를 막은 것이다.³⁶⁾

조선적의 한국 방문에 제동이 걸린 궁극적 이유는 국가 안보의 책임을 맡은 정부의 입장에서 북한의 대남도발과 조선적의 정치활동을 분리하여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조선총련 활동가들의 술회에 따르면, 냉전시대에는 조선적이 한국 국적을 위장 취득하여 민단에서 세력을 확장하거나 한국에서 공작활동을 벌인 사례도 있었다.³⁷⁾ 그렇다면 한국 국적으로의 이동이 늘어난 현재 상황에서 만일 북한이 대남공작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굳이 출입국 관리의 대상인 조선적을 내세울 까닭도 없다. 개인의 첩보 활동보다 오히려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기술적 접근과 안보의식을 더욱 중시해야 할 시대이기도 하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항의하여 조선총련 활동가들의 방한 신청을 거부하고, 반미·반한 의식이 투철한 조선적의 한국 내 정치활동을 제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13년 12월 19일);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004.html> (검색일: 2015.3.1).

35) 그 개정안은 여권법 12조에 규정된 외교부장관의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재량권을 제한하고,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는 안이었다. 정인섭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의 법적 문제,” p.10.

36) “조선련, 국내 입·출국 완전허용?...논란 ‘일파만파,’” 『뉴데일리』, 2011년 7월 5일;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84748>> (검색일: 2015.3.2).

37) 朴斗鎭, 『朝鮮總連: その虚像と實像』(東京: 中公新書, 2008).

조선적 재일조선인에 대한 조건 없는 포용과 자유왕래는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로 생각되나, 한국 사회의 인식이나 여론 형성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다. 조선적의 정치적 성향을 단순히 북한에 귀속시키거나 '중북몰이'로 배제시키는 태도는 북한에 대한 실망감을 쌓아두고 있는 조선적 동포와의 관계 해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도 국적 이동이 자유로워진 오늘날, 조선적의 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개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삶의 방식에 근거하는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조선적 재일조선인 운동사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조선적 자신의 정치적 책임 의식을 촉구하며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V. 조선적 재일조선인은 '기민, 난민'인가?

기민 담론은 전후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이 점령당국(SCAP: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연합국 최고사령관)과 일본, 그리고 남북한 2개의 조국에게서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피해자 의식을 담고 있다.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개개인들이 내쳐지는 사태는 비단 재일조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해도 단일민족의식이 강한 일본 사회에서 재일동포는 피차별 민족의 처지에 있었고, 그 민족적 수난사는 수없이 표상되어 왔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의 삶을 단순히 피해자의 모습으로 그려낼 수는 없다. 특히 재일조선인의 조직운동을 들춰보면, 그 이면에 생활의 권익과 정치적 이상을 좇아 판단하고 행동해 온 역동적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1946년 11월, SCAP는 일본에 잔류하는 조선인에게 한반도에 국가가 수

립될 때까지 일본 국적을 보유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해 10월에 한반도에서 대구폭동이 일어나자 점령당국은 한반도의 자치능력을 의심하게 되었고, 일본에서도 공산당과 재일조선인들의 공동투쟁 및 좌·우파의 폭력적 충돌을 점령정책의 저해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었다.³⁸⁾ 이에 따라 SCAP는 1947년 5월에 외국인 등록령을 실시하여 조선인을 일본국민에서 해제시키고, 좌·우파의 활동가들을 ‘범죄예비군’으로 간주하여 그들의 본국 송환을 가능케 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중에 서둘러 성립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1952년 4월에 발효되어 일본과 한반도의 독립이 승인됨에 따라, 재일동포는 정식으로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³⁹⁾

SCAP에 의한 일본 국적의 해제를 두고 1990년대 이후 재일조선인 연구자들은 국민적 권리의 박탈이자 기민(棄民)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에 반미-아시아주의가 고양된 일본과 한국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전후처리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확산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기민정책이 인터넷의 재일조선인 담론에서도 거론되었다. 그러나 역사

38) 당시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여론은 암시장에서의 불법거래, 공산당과 연계된 정치활동, 밀입국과 폭력 등의 부정적 이미지였다. 일본공산당과 재일조선인의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한 전국적 통계(篠崎平治, 『在日朝鮮人運動』, 長野: 畠文社, 1955)에 따르면, 1952년 1년간 폭행, 상해, 화염병 투입, 투석, 인분 투입, 방화, 폭약 사용 등 총 사건 396건에 검거인 수 1605명이었다. 李瑜煥, 『在日韓國人60萬-民團朝總聯の分裂と動向』(東京: 洋洋社, 1971), p.30.

39) 조약 발효일 9일 전에 법무부 민사국장은 ‘평화조약에 따른 조선인, 대만인 등에 관한 국적 및 호적 사무처리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民事甲通達第428號〉를 발표했다. 그 제1항에서는 “조선 및 대만은 조약 발효일로부터 일본국 영토에서 분리되므로 이에 따라 조선인 및 대만인은 내지에 재주(在住)하는 자를 포함하여 모두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고 정하였고, 제3항에서는 일본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자는 혈통과 무관하게 일본국민으로 간주했다. 정인섭, “재일한인의 국적과 남북한의 국적법 개정,” p. 432. 일본어 원문은 “1952年4月19日付け民事甲第438號法務府民事局長通達”; (<http://www.kokuseki.info/kitei/tsutatsu/1952-04-19.html#chu1>) (검색일: 2015.4.15) 참조.

적 실상은 그렇게 일방적이거나 단순하지 않다. 당시 재일조선인들은 스스로를 언젠가 조국으로 돌아갈 '해방인민', '해방된 국민'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일본 국적의 해제를 당연시했다. 해방 후에 독립을 기대했던 한반도의 민심이 신탁통치에 반대했듯이, 명분상으로도 일본 국민의 '권익'을 추구할 계제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일본 국민의 해제가 순전히 '자주민' 의식에서 나온 것만도 아니었다.

2015년 1월에 이와나미(岩波)신서로 출판된 『재일조선인 역사와 현재』에서도 기민 담론의 일방적 피해의식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재일조선인을 대표했던 재일본조선인연맹(좌파 단체)이나 조선건국축진청년동맹(우파 단체)이 요구한 것은 '패배한 일본국민'과 구별되는 '외국인으로서의 처우'였다. 이것은 점령당국 하에서 '생활의 권익'을 챙기는 문제였다. 조선인이 패배한 일본국민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내지 않고, 승리한 연합국민에게 분배되는 특별배급을 받으려면 우선 일본 국민에서 해제되어야 했다.

조련이 생활권 옹호를 위해 가장 중시한 과제의 하나였던 재산세 문제만 해도, 패전국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갖는 재산세가 조선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연합국민을 비롯한 외국인에게 부여되었던 특별배급(일본인의 주식배급이 1일 2.7홉(합)인 것에 비해 4홉이 지급됨)도 조선인이나 건청·민청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일관되게 그 적용을 요구했다.⁴⁰⁾

패전 직후에 재일조선인은 연합국민, 즉 외국인의 입장에서 일본인보

40) 水野直樹·文京洙, 『在日朝鮮人 歴史と現在』, pp.108~198. 그러나 1947년 4월 총선거를 맞이할 무렵에는 이러한 외국인 논리와 일본 사회에 생활 기반을 두는 주민 논리 사이에서 모순이 표면화한다고 말한다. 인용문을 통해 조선인 중에서는 빈곤층만이 아니라 재산세를 회피할 만큼의 부유층도 존재했고, 이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모두 획득하기 위해 분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 풍부한 물자를 배급받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일본공산당의 재건을 주도하고 ‘인민혁명정부’ 건립을 위한 운동까지 주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운동을 탄압하는 방법으로 조선인 활동가에 대한 본국 추방령이 실시되었고, ‘외국인 등록’은 강제 퇴거와 재입국 불허를 가능하게 만든 법적 근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좌·우파의 폭력적 대립 구도에서 폭도로 추방되던 조선인들은 강제 추방될 불안 속에서 활동해야 했고, 한반도의 정세 불안을 피해 일본으로 재입국한 재일조선인도 밀항자로 살아야 했다. 그 때문에 이후 재일조선인 운동에서 제기하고 저항한 문제는 생존권과 참정권의 획득, 강제 퇴거와 지문 날인의 폐지 및 재입국 허가 등에 관한 것이었다. 애초에 외국인 자격을 폐지하고 일본 국적을 다시 부여하라는 요구는 없었다.

최근의 기민 담론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사상(捨象)한 채, 반일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직설 화법으로 재구성되어 한일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재일조선인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경식의 저서 『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의 일부를 보자.

그리고 패전으로 식민지 지배가 끝난 후에는, (SCAP와 일본은: 인용자) 조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들의 ‘일본 국적’을 부정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이후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 조치조차 없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조선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⁴¹⁾

41) 서경식 지음, 형진의 옮김, 『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서울: 반비, 2012), p.134. 일본어판은 徐京植, 『在日朝鮮人ってどんな人?—中學生の質問箱』(東京: 平凡社, 2012). 인용문은 인터넷의 어느 블로그에 게시된 서경식의 글 중 일부를 그대로 복사한 것이다. <<http://kkangjong.blog.me/220298444870>> (검색일: 2015.2.1).

여기에서 “조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라는 진술은 “전체 조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면 타당하다. 만일 일본 국적으로 남기를 원했다면 ‘친일 협력자’로 배제되었을 터이지만, 그들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 국적의 박탈 후에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조치조차 없었다”는 진술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일본인보다 유리하게 배급 받던 점령시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빈곤한 조선인들은 생활보호를 받고 있었다. 일본의 주권 회복을 앞둔 1951년부터 전후 부흥에 성공한 1957년까지 매년 재일조선인의 생활보호율은 최저 10.8%에서 최고 24.1%에 이른다. 이것은 일본인의 최저 1.6%에서 최고 2.5%와 비교할 때, 5배에서 10배 이상의 비율이다.⁴²⁾ 1950년 에다가와(枝川町)의 조선인 마을에서는 매월 조선인 163세대에게 총액 60만 엔(1세대에 3600엔) 정도가 지급되었다.⁴³⁾ 이는 당시 조선인 중에 빈곤층이 많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위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조선인이 사각지대에 버려진 상태는 아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의 일본어판 제목은 『재일조선인은 어떤 사람?—중학생의 질문상자』로, 중학생들에게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사정을 알기 쉽게 전달하려는 입문서로서 기획되었다. 식민주의 비판론에 입각한 서경식의 기민 담론에 대해서, 아마존의 독자서평을 들춰보면 찬반양론으로 명확하게 갈린다. 재일조선인을 역사의 피해자로 그리는 서경식의 감성 언어는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는 ‘착한 일본인’들에게 감화를 준다. 반면, 일본을 일방적 가해자로 증언하는 논리는 자신들이 ‘역사적 사실’을 중시한다고 주장하는 ‘협한류’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시키고 있다.

42) 水野直樹·文京洙, 『在日朝鮮人 歴史と現在』, p.145.

43) 李東準, 『日本にいる朝鮮の子ども: 在日朝鮮人の民族教育』(東京: 春秋社, 1956), pp.11~12. 당시 우동 한 그릇이 15엔 정도였다. 戦後昭和史, “うどん・そばの價格推移”; <<http://shouwashi.com/transition-noodles.html>> (검색일: 2015.4.12).

이 책의 기획 의도를 떠나서 일본인들에게 사실 왜곡이자 일본 비방으로 읽히는 기민담론은 ‘반일’과 ‘협한’의 갈등구조를 증폭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기민정책에 대한 비판은 어떠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변주되고 있는가? 한국전쟁의 휴전협정 이후에 조선적 재일조선인들은 북일국교 정상화를 촉구하고 귀국운동(북송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한일회담을 ‘굴욕외교’로 비판하고 한일국교 정상화에 반대했다. 당시 재일조선인과 연대했던 일본의 좌파 지식인들도 한일협정을 일본 국가독점자본의 한국 재침략으로 분석하면서 한국을 미국과 일본의 이중적 종속국가로 간주했다.⁴⁴⁾ 그들이 원하는 ‘북일국교 정상화’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냉전구도의 심화 속에서 실질적으로 성사되지 못했고, 결국 협정영주권에서 배제된 조선적은 스스로 제국주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주민’임을 당당하게 선언한 셈이었다.

스스로에게 ‘민족주체’의 자격을 부여한 재일조선인은 한국의 ‘신식민지적 군부정권’에 귀속되기를 거부하면서도, 정치적 투쟁 차원에서 한국의 ‘기민(棄民)정책’을 비판해 왔다. 협정영주권에서 배제된 조선적에게는 1981년에 ‘특별영주권’이 부여되었고, 1991년 일본의 출입국관리 특별법에서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일본 국적을 소유했던 외국인에게 특별영주권이 부여”됨으로써 비로소 한국 국적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2002년 김정일과 고이즈미의 북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44) 조선사 연구자의 대표적 상징인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의 한일회담 반대 논리를 비롯하여 일본조선연구소의 한일회담 반대 활동에 대해서는 조관자, “내재적 발전론의 네트워크, ‘민족적 책임’의 경계,” 강원봉·도베 히데아키·미쓰이 다카시·조관자·차승기·홍중욱, 『가지무라 히데키의 내재적 발전론을 다시 읽는다』(서울: 아연출판부, 2014)를 참조.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분출하면서, '북일국교 정상화'의 성사까지 숨죽여 기대하던 재일조선인 사회에도 치명적인 위기가 닥쳐왔다. '북일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동아시아 공동체론에 날개가 돋을 것인가를 관망하던 분위기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사태가 반전된 것이다. 더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1998) 이후 일본의 방위의식이 고조되고 풀뿌리 민족주의가 강화된 현실이었던 만큼, 북일 교섭의 가능성은 일시에 차단되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은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된다. 이후 납치 사실과 북한의 대응에 대한 일본인의 비난과 분풀이는 고스란히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전가되었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는 대북교류를 가로막고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 철회까지 요구했다.

일본 사회에서도 과거 식민지배의 폭력과 비교하며 일본의 과도한 '북한 때리기'와 퇴행적 자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상대 국가의 과거 폭력에 대한 명백한 사죄와 해결을 요구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치의 타협도 허락하지 않는 자세는 일부 한국인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자국 내 풀뿌리 민족주의의 비타협성과 도덕적 정당성에 맞서서 사태를 냉정하게 돌이킬 만한 정치가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만날 수 없다. 게다가 일본의 담론 지형에서는 198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군사독재의 신식민지'인 반면에 북한은 '인민의 낙원' '주체의 나라'로 과대 선전되었고, 일본은 늘 역사적 가해자로 비난받으며 풀뿌리 민족주의를 당당하게 펼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2년의 납치사건 국면을 계기로, 북한의 실상에 대해 잠재되었던 실망감과 일본의 민족주의적 반격이 일시에 폭발한 것이다. 그 후폭풍은 그동안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던 현실인식과 민족주의 표출에서 나타난 한일 간 불균형의 폭만큼이나 강한 진동으로 다가왔다.

이후 조선적을 이탈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조선총련의 하부 기

관과 조선학교가 문을 닫는 사태가 전개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의 역사적 피해자로서 다수자의 횡포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재일조선인의 도덕적 정당성이 훼손되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침묵해 왔던 자신들의 자세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비껴갈 수 없게 된 사실일 것이다. 원로 시인 김시종은 “북공화국의 국가범죄와 민족수난을 명확히 분별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식민통치 피해자의 정당성이 “한방에 날아가고” 납치 피해 가족들 앞에서 “몸이 움츠러드는” 느낌이라고 고백했다.⁴⁵⁾ 그러나 한국에서도 활동하는 대부분의 재일조선인 운동가와 지식인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침묵한 채, 한국과 일본의 국가폭력만을 문제 삼는 모습을 보였다.⁴⁶⁾

이 무렵부터 재일조선인 담론에서 민족교육을 지원한 ‘고마운 조국’이란 표어 대신, 북한 국가로부터 이용당하고 버림받았다는 기민의 논리가 공식적으로 거론된다. 북한의 영향력이 현저히 약화되면서, 재일조선인 스스로가 북한과 선긋기를 명시한다. 과거에 북한의 해외공민으로 인정되어 북한의 여권을 발급받았던 조선적의 귀속의식이 변화한 것이다. 이제 조선적은 북한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총련계의 일부 북한 국적자, 그리고 한국과 북한, 일본의 어느 국적도 선택하지 않는 무국적자로 나뉘어 정의된다.

더 이상 북한에 대한 귀속의식을 갖지 않게 된 경우에도, 재일조선인의 역사에서 정체성을 찾으며 스스로에게 분단을 넘어선 ‘통일 국적’에

45) 金時鐘, “お互いを見つめなおす契機となるよう” 『部落解放』 第511號(2003년 1월); “在日詩人の詩と音楽が融合 金時鐘さん, 京都で公演,” 『共同通信』, 2003년 7월 3일; <<http://www.47news.jp/CN/200307/CN2003070301000545.html>> (검색일: 2012.2.29).

46) 徐勝, 『東アジアの國家暴力と人權・平和』(東京: 立命館大學法學叢書, 2011)은 자신의 옥중생활에 기초하여 한국과 대만의 국가폭력,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 및 미국의 군사전략을 비판하지만, 2011년이라는 시점에서 북한과 중국의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준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조선적을 유지한다. 조선학교에서 북한을 '조국'으로 새기고 조선총련의 하부 조직생활을 통해서 '조국 통일'을 위한 민족의식과 정치의식을 고양시켜 온 세대는, 북한과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도 곧바로 한국이나 일본 국적의 취득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조선적 소지자들 중 일부는 스스로에게 국민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진보적 세계관을 부여하며 무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다.

미래의 통일국가 건설을 표방하는 재일조선인의 경우, 스스로를 일본과 한국, 북공화국 모두에게 버림받은 '기민'이라고 말한다. 한국 국적자로서 스스로를 재일조선인으로 명명하는 서경식도 자신을 식민지 지배로 일본에 거주하게 된 '반난민'으로 말한다. 그러자 일본 넷우익과 재특회는 일본에서 특별영주권자로서 사회복지의 특혜를 누리면서도 일본을 비난하는 '거짓말쟁이'들은 일본을 떠나라고 역비판하면서 혐한 운동을 벌인다.

단지 조선적이라는 이유로 일본에서 강제 추방된 사례는 없다.⁴⁷⁾ 한국이나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장벽이 높은 것도 아니지만, 조선적을 굳이 바꾸지 않아도 일본 정주자로서의 생활이 위협받지 않는다.⁴⁸⁾ 일반 범죄자에 대한 추방 명령의 경우, 조선적이 아닌 외국인 일반에 해

47) 해방 직후에 한반도로 귀환하거나 한국전쟁 당시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재일동포가 일본에 재입국하지 못해 밀항하는 사례들이 1950년대 전반까지 빈번하게 있었다. 金贊汀, 『在日義勇兵歸還せず 朝鮮戰爭秘史』(東京: 岩波書店, 2007).

48)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자격 조건(거주 기한, 생계 능력)을 성립시켜야 하고, 범죄와 전과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는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제외된 조선적과 모든 동포들의 후손까지 일본에 정주할 수 있도록 1975년, 입국관리국 직원인 사카나카 히데노리(坂中英徳)가 귀화 조건의 완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기하였다(坂中英徳, “今後の出入國管理行政のあり方について,” 『入管月報』, 第176號, 1976) 당시 재일조선인들은 사카나카의 제언을 일본의 동화정책으로 비판했지만, '재일'의 정주화는 이미 필연적 흐름이 되고 있었다.

당하는 규정이다.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한, 일본에서 거주 자격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본에서 특별영주권을 가지며 '무국적자'의 권리와 자유를 당당하게 펼치려는 조선적을 '난민'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일본의 국가공무원이 되지 못하고 해외여행에 불편을 겪는다 해서 재일조선인을 '난민'으로 부른다면, 아프리카의 빈곤 난민이나 전쟁 난민, 중국 등지에서 불안에 떨며 불법 체류하는 탈북자들을 부를 이름이 없어질 것이다.

Ⅵ. 조선적의 한국 입국 제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남북한의 이질적 체제가 평화로운 통일을 구상하고 상생의 질서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상식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끼리'의 민족 차원이 아닌 국제 사회의 공존공생 질서에 협력하면서, 무력행사가 아닌 민주적 절차에 입각하여 공공의 가치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및 그 진위 논란, 연이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과 최근의 장성택 숙청 등 일련의 사건은 북한을 평화적 통일의 협상 상대로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통일에 대한 '동상이몽'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오늘날, 북한의 평화통일 공세와 무력 도발이라는 양날의 칼에 냉철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터넷 여론이 형성되는 환경에서, 평화통일 공세 및 민족공조론은 국내외에서 모든 한글 능력자들에 의해 직접 발신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 통제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북한 당국 및 북한을 지지하는 해외동포의 주장과 요구를 힘겨루기로 일관하면서 무조건 배제

할 수도 없고, 민족화합이라는 명분으로 무조건 포용할 수도 없는 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적을 소지한 재일조선인에게도 해당한다. 조선적은 누구인가? 최근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조선적은 <남도 북도 선택하지 않는 무국적자>라고 정의되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의 기사(2014년 3월 13일)에서는, “조선적(朝鮮籍)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건너갔다 해방을 맞은 뒤로 남북한 어느 국적도 선택하지 않아 무국적으로 남아있는 동포들로, 부모의 선택을 따른 후손들을 포함해 5~6만 명이 일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⁹⁾고 보도한다. 그러나 조선적이 실제로 남북의 어느 한쪽과도 무관하게 단순한 일본의 국내적 행정 문제로 무국적자로 살아왔다면, 한국 정부가 고향을 찾는 동족의 출입국을 통제할 이유도 명분도 없을 것이다.

조선적은 역사적으로 북한과 조선총련에 연루된 이름이 분명하다. 그 다수는 북송동포나 조선총련 활동가의 가족이지만 북한에 대한 충성도는 과거와 다르다. 현재 조선총련 활동가조차도 북한의 세습정치를 비판하지만 생활의 연속성에서 조선총련을 떠날 수 없다고 한다. 일찍이 조선총련을 떠났지만 사회주의적 신념이나 통일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조선적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준통일 국적’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부여하고 있다. 무국적자로서 조선적을 지키는 이유는 가족, 의리, 신념, 가치의식, 생활의 수단과 존립의 근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조선학교 출신이 대부분인 조선적 소지자들은 스스로에게 식민주의와 분단을 극복한다는 역사적 의식과 민족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햇볕 정책이 여운을 드리웠던 2006년 무렵(북한의 핵실험 이전)까지만 해도,

49) “조선적 입국 문제 후퇴…재일조선인들의 ‘토로,’” 『연합뉴스』, 2014년 3월 13일.

재일조선인의 민족담론에서는 ‘통일조국’으로의 귀환이 중시되고 실천 활동이 모색되는 분위기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조선적 소지자는 한국을 방문하여 조국통일과 민족문제를 논하며 미군철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렇게 되자, 2009년 이후 보수정권은 조선적의 정치활동을 이유로 ‘여행증명서’ 발급을 ‘정치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정**(일본의 모 대학 교양교육센터 준교수)는 2009년 6월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한·일 공동심포지엄 『식민지 재일조선인 사회의 형성과 단체활동의 전개』의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해 5월에 오사카 영사관에서 ‘임시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자, 그는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취소’를 위해 오사카 총영사를 제소했다. 2009년 12월 31일, 1심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4부(판례 2009구합34891)는 주일오사카총영사관 총영사의 ‘재량권 남용’을 지적하며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0년 9월 28일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판례 2010누3536)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원고가 ‘재외동포 NGO대회’에 참석하여 반국가단체로 판시된 한국민주통일연합(한국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일 한국인들의 단체, 약칭 한통련) 부의장과 회합하였고, 조선총련 산하 재일본조선청년동맹(약칭 ‘朝靑’) 대표단의 일원으로 조선대학교 재학 중 방북하여 친북활동을 한 점이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학술회의가 종료되어 여행목적은 이미 상실했다는 점도 거부 취소를 무효하게 만들었다. 2013년 12월 12일 대법원 특별3부(판례 2010두22610)도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선적의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문제를 다루는 매체는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민중의 소리와 인터넷 블로거들이다. 주된 논조는 한국 보수정권과 사법부의 조선적에 대한 ‘역사적 몰이해’와 ‘기민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의 가혹한 차별과 탄압에 직면해왔던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몰역사적인 판결”이자, “조선적 재일동포

의 간절한 염원인 고향 방문과 자유로운 고국 방문을 가로막는 정권의 행태에 철저히 편승한 마녀사냥식의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것이다. 지구촌동포연대(KIN) 대표 배덕호는 대법원의 판결은 “결과적으로 지난 독재 정권 시기, 일제강점기의 피해자인 재일조선인을 외교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며 자국 국민을 버리고 방치한 ‘기민(棄民) 정책’의 연장선상”이라고 말한다.

비판론자들은 일본을 가혹한 지배자로 못박아두고 한국 정부가 한일 협정 이후 조선적을 제외시킨 문제를 ‘기민 정책’으로 비판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인식 자체가 북한과 조선적을 정치적 행위주체로 바라보지 않고, 조선적을 일본 및 한국의 보수정권에 의한 민족적 피해자로만 그려낸다. 민족감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읍소하고 선전하는 태도이다. 과장된 민족주의를 걷어내고 보면, 실제 문제의 핵심은 한국 정부와 재일조선인, 양자 모두의 ‘정치적 의지’에 관련한 대립 양상이다. 특히, 한국의 보수 정권에 비타협적인 조선적 소지자의 정치적 태도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선적의 정치활동을 원천 봉쇄하려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통치 이념이 명백하게 전면 충돌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조선적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문제를 연구한 정인섭은 대법원의 판결이 법해석의 관점에서 타당한 조치였지만, 정부가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삶에 대한 이해와 포용의 자세를 보여서 상호교류의 폭을 넓힐 것을 요구했다.⁵⁰⁾ 이에 대해 필자는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삶’을 서술하는 재일조선인 운동사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며, 재일조선인 스스로가 먼저 ‘민족 수난자’라는 기존의 역사상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한다. 오늘날 변화하는 시대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수난만을 읍소하고 권리만을 옹호하려는 모습은 한일의 민족적 갈등구도에서 지지자들

50) 정인섭,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의 법적 문제,” pp.22~23.

언을 수는 있어도, 윤리적으로 명쾌한 모습은 아니다. 이제 재일조선인들은 스스로 삶을 영위하는 인격체로서, 일본의 동화교육이나 식민주의에 대해 비판해 온 민족주체로서, ‘사회주의 조국으로의 통일’을 외쳐온 정치운동의 주체로서 살아온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줄 때라고 제안한다. 이러한 생각은 재일조선인의 국적문제와 한국 이동의 부자유에 대해서 발언해 온 조경희의 논문을 읽으면서도 똑같이 떠올랐다.

유학과 업무 차원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재일동포를 인터뷰한 조경희는 “그들은 자신들의 월경적 활동과 비-분단적 정체성을 한국 사회에 발신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재일조선인 표상과의 교섭과정을 통해서 정체성을 재구축한다”고 분석한다.⁵¹⁾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적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분단적 사고를 비판해 온 조경희는 결국 조선적 재일조선인에게도 한국을 자유 왕래하며 ‘비-분단적 정체성’을 발신하고 재정립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필자도 그러한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원래 지역적 혹은 민족적 용어이던 ‘조선’은 어느새 냉전 논리의 역학관계 속에서 정치와 해석의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⁵²⁾ 원래 ‘조선’과 ‘한국’을 둘러싼 호명은 ‘정치적’인 것이었고 그 해석은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치적’으로 변주된다.⁵³⁾ ‘조선’ 호명의 정치성을 탐색시킨 조경희의 주장 자체가 ‘탈냉전’의 구호를 소비하는 시대에 조선적 재일조선인이 북한에서부터 이탈하게 된 상황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주장은 냉전기의 역사를 사상(捨象)시키고 있다. 비-분단 또는 탈-분단을 말하면

51) 조경희, “탈냉전기 재일조선인의 한국이동과 경계 정치”.

52) 조경희, “남북분단과 재일조선인의 국적,” p.274.

53) 재일조선인의 호명 문제에 대해서는 조관자, “전후 재일조선인의 해방운동과 지식의 정치성,” 『일본사상』, 제22호(2012) 중에서 2절, “조선’이라는 호칭과 정체성 정치”를 참조. 장인성 편, 『전후 일본의 지식풍경』(서울: 박문사, 2013)에 수록.

서, 한국과 북한의 현재의 적대적 대립 상황을 외면할 수도 없다. 당파의 논리에 입각한 정치적 대립을 지속하면서 자신들의 윤리적 과제를 외면한 채 '분단 극복'인 것처럼 자족해서도 안 될 것이다.

분단을 넘어서는 정체성의 확립과 실천은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및 교류 속에서도 확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국적 문제를 떠나 재일조선인은 스스로가 독자적 정치 노선과 사상적 지향성을 가지고 일본 사회에서 정치적 투쟁 주체로 살아왔다. 한국이라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으려는 의지 자체도 스스로의 주관에서 비롯된 정치적 결단이며,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도 자율적 정치의식의 발로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정치적인 불관용만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조선적 재일조선인의 정치적 비타협성과 정치운동의 편향성을 모두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북도 아닌' 조선적의 정치적 지향성이 드러나고 있지만, 조선적 소지자는 북한을 '사회주의 조국'으로 인식하거나 그 민족적 정통성을 인정했으며, 남북이 서로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연방제 통일을 외친 적도 있다. 북한이 남한 정권을 '정치적'으로 인정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조선적의 일부는 남북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특혜'도 누렸다. 일본인 납치 문제로 인한 일본의 대북통제 때문에 북한을 통행할 기회는 실질적으로 제한되었지만, 대신에 평택의 미군기지 철수, 제주도의 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한국의 반미 평화 운동에 조선적이 직접 참가할 수도 있었다. 이라크 전쟁으로 고양된 반미 운동의 현장에서 조선적의 재일조선인들이 북한의 반미, 통일 구호와 일치하는 내용을 그대로 외치는 경우도 있었다.⁵⁴⁾

54) 필자는 재일조선인 정** 씨를 일본에서 본 적이 있다. 2006년 겨울로 기억하는데, 당시 대학원생이던 그가 도쿄의 어느 한 출판기념회에서 평택의 반미집회에 참가한 경험을 피력했다. 일본에 거주하며 마침 정** 씨의 연설을 듣게 된 필자는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재일조선인 청년이 평택 주민들 앞에서 북

반면에 조선적 소지자가 북한에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고 북한 정권과 불화하는 모습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는다. 가능성은 있지만 딱히 알려진 바가 없다. 2013년 12월 일본 문부성은 조선학교 학생 몇 명이 고 김정일 서기에게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는 가극을 공연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거부했다.⁵⁵⁾ 조선학교의 재정난이 심각하다고 해도 북한에 대한 충성의 의례는 거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학교에는 조선적만이 아닌 한국 국적으로 전환한 학생들이나 재일 중국조선족 학생들도 다닌다. 조선학교에서 ‘남도 북도 모두 관계를 맺는’ 학생들이 장차 새로운 재일조선인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오늘날, ‘남도 북도 아닌 통일조국’으로의 귀환을 꿈꾸는 조선적 재일 동포는 자신들에 대한 한국·일본·북한의 기민정책을 비판한다. 하지만, 국민국가에 대한 비판자로, 혹은 조선적의 역사적 정체성에서 의미를 찾는 정치적 주체로 살아가려 한다면, 정식 국적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정치적 불이익은 이미 감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감내해야 할 몫일 것

한의 어법으로 미군철수를 외치는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렸고, 한국의 변화와 정권의 관용성에 놀랐던 기억이 난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보수진영의 ‘탄핵 심판’이 국민적 반발 속에서 수포로 돌아간 정치 국면에서, 2005년부터 북한은 한국의 인터넷 공간 등에 ‘반미 민족주의 평화 공세’를 적극 펼치고 있었다(필자는 당시 ‘오마이뉴스’ 등에서 북한의 인터넷 부대를 포함한 해외동포의 필치가 느껴지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감지했다). 필자는 정**씨가 결코 위협적이거나 무모한 사람이 아니며, 그의 학술 활동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의 반미 민족주의가 남한에서 생생하게 재현되는 것을 ‘탈분단’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전개된 조선적의 통일표상과 통일운동을 수궁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적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정부의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55)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금지 이유에 대해서는 文部科學省, “朝鮮學校への補助金に關する都道府”(2013);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jcsFiles/afieldfile/2013/12/27/1342846_03.pdf> (검색일: 2015.4.1).

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대해 동족차별을 항의한다면, 북한 동족의 자유로운 해외 출입국이나 북송 동포의 자유로운 일본 방문을 위해서도 싸워야 공평할 것이다. 만일 북한 정권의 정치적 불관용성 때문에 북 동포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침묵할 수밖에 없다면, 한국과 일본의 국가적 폭력을 비판해 온 자신들의 정치적 당파성과 주체적 실천의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재일조선인 담론에 나타난 ‘기민’ 의식을 넘어서 스스로 정치적 책임 주체의 모습을 보일 때, 그 정치적 실천에 대한 ‘중북 비판’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국과 일본의 재일조선인 담론에서는 ‘남도 북도 아닌 무국적자’로서 조선적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북한과의 역사적 흔적을 소거하기 전에, 먼저 조선적의 정치성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조선적 사회와 재일조선인 담론에서 ‘남과 북, 그리고 일본’에 관련한 역사적, 정치적 문제를 균형감 있게 성찰하면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제기할 때, 한국 정부와 연구자들도 그 신념과 실천을 존중하면서 상생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접수: 2015년 5월 5일 / 심사 : 2015년 5월 18일 / 게재확정: 2015년 5월 18일

【참고문헌】

국문 논문 및 단행본

- 강덕상·정진성 외.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9.
- 강원봉·도베 히데아키·미쓰이 다카시·조관자·차승기·홍종욱. 『가지무라 히데키의 내재적 발전론을 다시 읽는다』. 서울: 아연출판부, 2014.
- 서경식. “재일조선인이 나아갈 길: ‘에스닉 마이너리티’인가 ‘네이션’인가.” 『창작과 비평』 제102호(1998년 겨울). pp.353~371.
- 서경식 지음. 형진의 옮김. 『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 서울: 반비, 2012.
- 유현수.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및 사회적 위상: 1991년 합의각서 이후를 중심으로.” 『일본비평』 제12호(2015년 2월). pp.72~101.
- 이광규. 『在日韓國人: 生活實態를 中心으로』. 서울: 일조각, 1983.
- 장인성 편. 『전후 일본의 지식풍경』. 서울: 박문사, 2013.
- 정인섭.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의 법적 문제.”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1호(2014). pp.1~24.
- 정인섭. “재일한인의 국적과 남북한의 국적법 개정.” 강덕상·정진성 외.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9.
- 조경희. “탈냉전기 재일조선인의 한국이동과 경계 정치.” 『사회와역사』 통권 제91호(2011년 9월). pp.61~98.
- 조경희. “남북분단과 재일조선인의 국적.” 『통일인문학』 제58집(2014년 6월). pp.253~277.
- 조관자. “내재적 발전론의 네트워크, ‘민족적 책임’의 경계.” 강원봉 외. 『가지무라 히데키의 내재적 발전론을 다시 읽는다』. 서울: 아연출판부, 2014.
- 조관자. “전후 재일조선인의 해방운동과 지식의 정치성.” 『일본사상』 제22호(2012). pp.193~214.
- 한영구·윤덕민 공편저. 『현대 한일관계 자료집1(1965년~1979년)』. 서울: 오름, 2003.

일문 논문 및 단행본

- 公安調査廳. 『朝鮮總連を中心とした在日朝鮮人に關する統計便覽 昭和56年版』. 東京: 公安調査廳, 1982.
- 金石範. “在日の虚構.” 『在日の思想』. 東京: 筑摩書房, 1981.

- 金時鐘. “お互いを見つめなおす契機となるよう” 『部落解放』 第511號(2003년 1월)
- 金英達. 『日朝國交樹立と在日朝鮮人の國籍』. 東京: 明石書店, 1992.
- 金有燮. “民族の誇りをかけた闘い: 民族教育と集團主義教育の意味”. 『部落解放』 第687號(2014年 1月). pp.24~33.
- 金贊汀. 『在日義勇兵歸還せず 朝鮮戰爭秘史』. 東京: 岩波書店, 2007.
- 李東準. 『日本にいる朝鮮の子ども: 在日朝鮮人の民族教育』. 東京: 春秋社, 1956.
- 李瑜煥. 『在日韓國人60萬-民團朝總聯の分裂と動向』. 東京: 洋洋社, 1971.
- 朴慶植. “在日朝鮮人運動史—その生活・運動研究序説” 『季刊三千里』 第1號(1975年 春). pp.194~197.
- 朴斗鎮. 『朝鮮總連: その虚像と實像』. 東京: 中公新書, 2008.
- 山野車輪. 『在日の地圖: 大韓棄民國物語』. 東京: 海王社, 2006.
- 山村政明. 『いのち燃えつきるとも』. 東京: 大和書房, 1971.
- 徐京植. “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がネーションが”. 『歴史學研究』 増刊號(1997年 10月).
- 徐京植. 『在日朝鮮人ってどんな人?—中學生の質問箱』. 東京: 平凡社, 2012.
- 徐勝. 『東アジアの國家暴力と人權・平和』. 東京: 立命館大學法學叢書, 2011.
- 篠崎平治. 『在日朝鮮人運動』. 長野: 令文社, 1955.
- 宋基燦. 『語られないものとしての朝鮮學校』. 東京: 岩波書店, 2012.
- 水野直樹・文京洙. 『在日朝鮮人 歴史と現在』. 東京: 岩波新書, 2015.
- 鄭大均. 『在日韓國人の終焉』. 東京: 文藝春秋, 2001.
- 池東旭. 『在日をやめなさい—70萬人の優秀なマイノリティに告ぐ!』. 東京: ザマサダ, 1997.
- 坂中英徳. “今後の出入國管理行政のあり方について.” 『入管月報』 第176號(1976).

영문 단행본 및 논문

- Burgess, Chris C. 2007. “Multicultural Japan? Discourse and the Myth of Homogeneity.” *The Asia Pacific Journal: Japan Focus*; <<http://www.japanfocus.org/-Chris-Burgess/2389>>
- Hester, Jeffrey T. “Datsu zainichi-ron: An Emerging Discourse on Belonging among Ethnic Koreans in Japan,” Nelson H. H. Graburn, John Ertl and R. Kenji Tiemey ed, *Multiculturalism in the New Japan: Crossing the Boundaries Within*, New York: Berghahn Books, 2008. pp.139~150.

신문기사

- “특파원 리포트! 조선총련 간부들도 사석에선 北 비판… 젊은 활동가들은 北 추종만 말고 독립활동 하자고 해.” 『조선닷컴』, 2010년 2월 10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0/2010021000082.html>.
- “‘조선적’은 적대적? ‘조선적’ 재일동포의 여행증명서 발급 요청 거부는 정당하다 판결한 대법원, 재일동포 역사와 현실 무시한 처사.” 『한겨레 21』, 제991호 (2013년 12월 19일).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004.html>.
- “조선적 입국 문제 후퇴…재일조선인들의 ‘토로.’” 『연합뉴스』, 2014년 3월 13일.
- “조총련, 국내 입·출국 완전허용?...논란 ‘일파만파.’” 『뉴데일리』, 2011년 7월 5일;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84748>>.
- “在日詩人の詩と音楽が融合 金時鐘 さん, 京都で公演.” 『共同通信』, 2003년 7월 3일; <<http://www.47news.jp/CN/200307/CN2003070301000545.html>>.

인터넷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014년 5월 20일; <<http://www.law.go.kr/main.html>>.
- 대한민국 민단. “민단과 재일동포의 통계”; <<http://www.mindan.org/shokai/toukei.html>>.
- 배덕호 KIN(지구촌동포연대) 대표. “조선적 재일동포에게 등 돌린 정부, 거드는 대법원.” 『프레시안』, 2013년 12월 18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2573>>.
- 통일부 통일 미래 길잡이 북한 전망대. “화려한 허상, 재일조선인 북송사업의 비극.” 2015년 2월 18일; <<http://blog.unikorea.go.kr/4850>>.
- 文部科學省. “朝鮮學校への補助金に関する都道府” (2013);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icsFiles/afieldfile/2013/12/27/1342846_03.pdf>.
- 日本 文部省. “資料1 高校無償化に係る朝鮮高級學校の審査狀況.” 2012년 3월 26일; <http://www.mext.go.jp/a_menu/shotou/mushouka/detail/1342909.htm>.
- 日本 總務省 統計局. “人口推計.” 2014년 5월 20일; <<http://www.stat.go.jp/data/jinsui/pdf/201405.pdf>>.
- 日本國籍のなしくずし剥奪を許さない會. “1952年 4月 19日付け 民事甲 第438號 法務府民事局長通達”; <<http://www.kokuseki.info/kitei/tsutatsu/1952-04-19.html#chu1>>.
- 戦後昭和史. “うどん・そばの價格推移”; <<http://shouwashi.com/transition-noodles.html>>.

Beyond the consciousness of “Abandoned people” in the
discourses of Jaeil Joseonin
: Thinking of the political subjectivity

Jo, Gwan-ja (IJ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Zainichi Korean with Joseon-jeock (Chōsen-seki in Japanese)'s senses of belongingness and being abandoned. In general, Korean residents' nationalities in Japan a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Joseon-jeock, South Korean, and Japanese. Althoug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regarded those with Joseon-jeock as its expatriates, in reality Joseon-jeock has been the temporary status of Japanese foreigner register since 1947. From the late 1990's, many of Zainichi Koreans with Joseon-jeock have changed their nationality to South Korea or Japan. Recently, some of Zainichi Koreans with Joseon-jeock asserted independence of the Chongryeon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fro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Even after renouncing Joseon-jeock, some of Zainichi Koreans still have a sense of ethnic subjectivity while they refuse to belong to Korea or Japan as nation states.

Zainichi Koreans (Jaeil Joseonin in Korean) continually maintaining Joseon-jeock have asserted that South Korea has to achieve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through withdrawal of the U.S. Armed Forces and

abandoning anti-sentiment against North Korea. To prevent dissemination of their political ideolog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restrained their political activities in its territory, and refused the issue of “travel certificate” to Zainichi Koreans with Joseon-jeock since 2009. Accordingly, critical public opinion against this harsh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has risen up. This paper will rethink of Zainichi Koreans with Joseon-jeock’s sense of belongingness, and the discourses of “Abandoned people”.

Key words: belongingness, Abandoned people, political subjectivity, Joseon-jeock (Chōsen-seki in Japanese), Jaeil Joseonin, travel certificate

조관자(Jo, Gwan-ja)

도쿄대학교 총합문화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본 주부(中部)대학에서 근무한 뒤, 현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HK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논문으로 “Beyond the criticism of assimilation: rethinking the politics of ethno-national education in postwar Japan” (Inter-Asia Cultural Studies)와 “일본 우익사상의 부흥과 ‘좌우합작’ 등이 있으며, 최근 저서로 『일본, 상실의 시대를 넘어서』(편저), 『가지무라 히데키의 내재적 발전론을 다시 읽다』(공저)가 있다.